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79-1호 2005년 08월 05일(금)

제목1: ☑협회 8월임시 이사회 소식

- 축산물위생처리협회 8월 임시이사회가 8월 4일 협회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상진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축장현안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되었습니다.

(1) 보고사항 및 현황

1) 한우자조금 관련

- 한우협회장이 도축장전기로 농사용전환을 위해 전국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 의 서명을 받아 산자부와 국회에 협조요청.
- 05" 도축장운영자금에 대한 협약서 제출 철회
- 농림부에서 한우협회지부장이 미납된 농가를 찾아 농가납부 독려하라고 요청.
- 농림부에서 축산기업조합도 농가에서 한우자조금납부에 협조하라고 요청.

2) 양돈자조금관련 (포천농축산 김명규사장님)

- 등급판정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3군데서 한달에 3장의 독촉장이 날라온다.
협조문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업자 단체에서 의법조치한다는 등의 협박성의 독촉장이 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건과 행정소송 및 위헌제청건은 곧 결정이 날 것이다.

3) HACCP점검 관련

- 8월중 운영자금 대출기관확대(농협단위조합 및 신탁등) 예정.

4)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도축장 관련

- HACCP운용수준평가기관 설립
제9조2항(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
- 시,도로 이관될 권한 농림부장관포함 강화
법제28조-부과금처분, 법제35조-시설개수, 법제38조-폐쇄조치
법제41조-수수료
- 파견 검사원지위, (검사보조원 정차 축소 계획)
법제13조2항(도축검사원) - 제도권으로.

(2) 의결사항

1) 비상대책위원회 존치여부

- 1) 시한 : 2006년 2월 총회까지
- 2) 권한 : 후임자 선임 및 비상대책 업무집행
- 3) 위원 : 경기-포천,파주,퇴계원, 강원-홍천, 충북-대성, 충남-동방,중앙, 경북-예천, 대구-대구, 경남-부광,언양, 계-11명,
-소집시 3인이상이면 협회 대행권 행사. - 동의.

- 2) 한우자조금에서 홍보비로 5,000만원(처음 약속5,000만원이었으나 납부를 저조로 농림부에서 3,000만원으로 예산 삭감) 협회로 인수하여 홍보, 경비로 사용 의결. - 동의.

한국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79-2호 2005년 08월 05일(금)

(3) 협의사항

-도축장 현황세미나-

- 1) 일시 : 2005년 10월 중
- 2) 장소 : 축산물등급판정소 3층 회의실 (약 100명 수용)
- 3) 정책발표 : 농림부 축산국 과장님
- 4) 좌장 :
- 5) 토론자 : 도축장3,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통, 경기도청
- 6) 비용 : 약 700만원 (후원단체 협찬 및 찬조)
- 7) 후원 : 농림부,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양돈협회, 한우협회
- 8) 주관 : 축산신문사
- 9) 주체 : 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 일임.

(4) 이상진서기관과의 토론 및 건의

이: haccp운용수준평가로 인해 도매시장, L.P.C 공판장운영자금이 도축장에도 지원되어서 다행스럽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중 시,도에 이관된 권한을 농림부장관(검역원장)에 신고하게 한 것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위생,검역시 유통리콜부분 때문이다. 불법도축에 의한 벌칙, 형량을 상향조정은 원천적으로 불법도축을 막기위한 수단이다.

도축검사원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법적근거마련이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정의, 목적변경은 사육, 사료, 집유, 도축, 가공, 보관, 운송 7단계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HACCP적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포천 김사장: 민간지위의 기준원 설립은 반대다.

모든 법인은 상법상 동일하다. 동일법인이 콘설팅, 점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

PL법 가동중인 데 민간업체가 감독한다는 것은 2중,3중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중 보조금 앓나가는 단체는 축산물위생처리협회뿐인 것으로 아는 데, 정식으로 협조, 요청한다.

양산 강사장: 기준원 설립은 위헌요소가 크며, 옥상옥이다.

한우,양돈자조금 정부지원금은 축발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 의심스럽다.

HACCP운용수준평가자는 전문가가 아니며, 6개월 이상 교육후 자질이나 자격증을 갖고 하든 지, 검역원이나 식품개발연구원등에 주어야 한다.

운영자금도 1년 단기는 실효성에 한계에 있으며,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육류원산지 표시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업무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하라.

도축수수료 행정지도가격으로 해 달라.

도축계 살릴 수 있는 지도 방안을 강구 부탁한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79-3호 2005년 08월 05일(금)

이서기관: 도축업계의 현안이 너무 많이 누적되었다.

도축장사용 전기료 농사용전환 문제로 산자부와 여러차례 협조요청하였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수도료는 인하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 활용바란다.

도축수수료문제는 95“자율화 된 후 과당경쟁으로 인해 도축업계도 반성하여야 한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은 보건복지부에서 반대가 있어 미루어 졌으나 9월 소비자 단체(10개 업체)와 협조하여 계속 추진 할 것이다.

등급판정사 사무실임대료와 관리비는 내년도 예산 확보할 예정이다.

등급판정대행수수료와 자조금수수료는 법 개정시 5%가 될 것으로 안다.

도드람: 미납된 한우자조금 21두 때문에 대출취소 지경에 처해 한우자조금사무국에 대납을 하여도 좋으냐고 하니 좋다고 하여 대납하였는 데 6월 21두 공제 납부 하였드니 횡령이다며 고소하겠다고 한다.

협회: 한우자조금사무국과 절충해 보겠다.

안양: HACCP점검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여달라

예산: HACCP점검후 도축환경이 상향조정되었으나, 민간단체에 점검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서기관: 고민해 보겠다. 이전 14개조에서 7개조 이내로 할 계획이다.

기준원 설립등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관하여 충분히 들었으나 협회를 통해 정식 요청해 달라.

자조금은 농가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축장에서 한우자조금 납부농가와 미납농가를 한우자조금사무국에 통보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농협통장 1104-01-004150 한국축산물